2025년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

◇ 시설급여 (1일)

구 분		1등급	2등급	3~5등급	등급 외
요 양 급 여		90,450원	83,910원	79,240원	30,000원
비급여	상급침실 이용료(일)	없음			없음
	식재료비(1식)	식재료비(1식) 3,000			3,000
	간식비(1회)	간식비(1회) 0			0
	이/미용료 등	이/미용료 등 무료 & 실비 수납			무료 & 실비 수납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◇ 세부내역(30일 기준)

장 기 요 양 급 여											
급여구분	부담	□본인부담 20 %			□본인부담 12 %			□본인부담 8 %			□ 기초수급자
		1등급	2등급	3~5등급	1등급	2등급	3~5등급	1등급	2등급	3~5등급	
급여	공단부담 (80%~92%)	2,170,800	2,013,840	1,901,760	2,387,880	2,215,224	2,091,936	2,496,420	2,315,916	2,187,024	면제
	본인부담 (8%~20%)	542,700	503,460	475,440	325,620	302,076	285,264	217,080	201,384	190,176	면제
비급여	본인부담 i	270,000	270,000	270,000	270,000	270,000	270,000	270,000	270,000	270,000	시에서 지원
본인부담금 ii (급여+비급여)		812,700	773,460	745,440	595,620	572,076	555,264	487,080	471,384	460,176	면제
□등급외 (본인부담 i +본인부담금 ii): 1,170,000 (270,000 + 30.000 * 30일)											

본인부담 i : 식대 3,000*3회

< (안내)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>

1.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

1) 기본원칙

-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,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, 이·미용비이며,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
-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(실비)만을 산정해야 하며,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

2) 세부기준

(1) 식사재료비 : 경관영양 유동식,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

(2) 상급침실 이용료

- 별도 청구비용 없음

(3) 이·미용비 :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·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, 단 시설종사자·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, 손·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

2. **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** :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